- (10) 우레탄폼 시공 작업 장소에는 물질특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비치하고 "경고·주의" 등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, 화기금지, 흡연금지, 인화성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1) 비상시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와 외부와의 연락장치, 비상용사다리, 개인용보호구, 구명 로우프 등을 갖추어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또한 사전에 비상대피경로를 확보하고 안내표지, 간이 비상탈출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정전이 되더라도 작동되는 유도등, 비상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12) 흡연금지 등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과 피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또한 소화기에 의한 초기진화 실패 시에는 즉시 화재장소에서 대피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.
- (13) 보수공사 시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(Sprinkler)와 같은 소 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 다.
- (14) 용접·용단 작업허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P-94-2012 (안전작업허가지침)에 따른다.
- (15) 기타 사항은 KOSHA GUIDE F-3-2011(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), KOSHA GUIDE F-1-2011(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16) 건축물에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476호 (건축물 내부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)에서 정한 난연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할로겐화합물이나 인 (Phosphate)계 화합물 등의 난연제를 혼합하는 것을 권장한다.